해상풍력 계획입지 및 산업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안 (허종식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4372

발의연월일: 2024. 9. 26.

발 의 자:허종식・어기구・김정호

박성준 • 이재관 • 유동수

김교흥 · 노종면 · 이훈기

주철현 • 한정애 의원

(11인)

제안이유

해상풍력사업은 그간 발전사업자가 개별적으로 입지를 발굴하고 주민수용성 확보 및 복잡한 인·허가 절차 등을 모두 수행함에 따라 사업추진이 지연되거나 난개발에 대한 우려가 높았음. 더불어 어업인 등이해관계자와 충분한 소통도 부족하였음.

이로 인해 올해 6월 기준, 상업운전 중인 해상풍력발전기 용량은 약 124.5MW로서, 2017년 '재생에너지 3020'에서 산업통상자원부가 밝힌 2030년 해상풍력 보급 목표인 12,000MW의 약 1% 수준으로 매우 저조한 실적으로, 국가 탄소중립 목표의 실현과 해상풍력 보급 목표의 차질 없는 이행을 위해서는 기존 해상풍력발전 보급 방식에서 벗어나획기적인 제도의 도입이 시급한 상황임.

이에 해상풍력의 계획입지 및 산업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 제정을 통해 정부가 주도적으로 입지를 발굴하고, 예비지구 지정 및 변경시

지방자치단체장의 의견 반영을 통해 지역환경에 적합한 해상풍력발전시설을 도모하는 동시에 접근시설 및 공동구 설치를 연계함으로써 해상풍력발전 전력의 안전한 송전으로 해상풍력발전 보급 확대와 산업활성화에 기여하려는 것임.

주요내용

- 가. 이 법은 계획입지를 통한 해상풍력발전시설의 설치와 해상풍력발 전지구의 조성에 관한 통합적 행정절차와 해상풍력산업 보급 활성 화를 위한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발전부문에서 온실 가스감축과 탄소중립 실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(안 제1 조).
- 나. 국가로 하여금 해상풍력발전 보급을 확대하고 해상풍력발전산업의 발전을 도모하는 데에 필요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·시행하도록 하는 등 해상풍력 보급 확대 및 산업 발전을 위해 국가, 지방자치 단체 및 해상풍력발전사업자가 담당해야 할 책무를 규정함(안 제3 조).
- 다. 예비지구·발전지구 지정, 해상풍력발전사업자 선정 및 실시계획 승인 등 해상풍력발전에 관한 사항을 심의·의결하기 위하여 국무 총리 소속으로 해상풍력발전위원회를 설치하고, 이를 효율적으로 지원하도록 산업통상자원부 소속으로 해상풍력발전추진단과 해상풍력발전지원단을 둠(안 제6조부터 제9조까지).

- 라.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상풍력입지정보망을 구축·운영하고, 위원회의 심의·의결을 거쳐 예비지구를 지정 및 기본설계안을 수립·확정하며, 예비지구를 관할하는 특별시장·광역시장·특별자치시장·도지사·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예비지구의 기본설계안에 대해 주민수용성 확보를 위한 민관협의회를 구성·운영하고, 지역주민 및 어업인 등이 발전지구의 해상풍력발전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함(안 제11조부터 제15조까지).
- 마.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경제성 확보가 가능한 풍황을 보유하는 등일정 요건을 충족하고 민관협의회의 협의를 거친 예비지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원회의 심의·의결을 거쳐 발전지구로 지정할 수 있 도록 함(안 제16조).
- 바.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송전사업자에게 공동접속설비 및 공동구의 건설을 요청할 수 있으며, 이 시설을 건설하는 경우 전력산업기반 기금으로 건설비용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(안 제17조).
- 사.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위원회의 심의·의결을 거쳐 발전사업의 능력을 갖춘 해상풍력발전사업자를 선정하고, 해상풍력발전사업자는 실시계획을 수립하여 위원회의 심의·의결을 거쳐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게 승인을 받도록 함(안 제19조 및 제20조).
- 아. 해상풍력발전사업자가 실시계획 승인 신청시 환경영향평가와 해역 이용영향평가 절차 일부를 생략할 수 있는 특례를 두고, 발전지구

- 에서 실시계획 승인 등을 받은 때에는 다른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 등이 의제되도록 함(안 제21조 및 제22조).
- 자.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「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·이용·보급 촉진법」 제2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집적화단지로 지정받은 단지에 대하여 위원회의 심의·의결을 거쳐 예비지구 또는 발전지구로 지정할 수 있도록 특례를 규정함(안 제29조).
- 차.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하여 교육훈련과 국제 협력을 추진하도록 규정하고, 공공성이 높은 위촉위원 등이 업무와 관련하여 금품의 수수 등 부정한 행위를 할 경우 이들을 공무원으 로 의제하여 처벌하는 규정을 둠(안 제30조부터 제34조까지).

해상풍력 계획입지 및 산업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안

제1장 총칙

제1조(목적) 이 법은 계획입지를 통한 해상풍력발전시설의 설치와 해 상풍력발전지구의 조성에 관한 통합적 행정절차와 해상풍력산업 보 급 활성화를 위한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발전부문의 온실가스 감축과 탄소중립 실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- 1. "해상풍력발전사업"이란 「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바다 또는 같은 호 나목에 따른 바닷가 중수심이 존재하는 해역에서 「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・이용・보급 촉진법」 제2조제2호나목의 풍력을 이용하는 발전사업을 말한다.
- 2. "해상풍력발전시설"이란 해상풍력발전설비, 송전 및 변전을 위한 해상풍력발전사업용 시설과 그 부대시설을 말한다.
- 3. "해상풍력발전산업"이란 해상풍력발전시설의 설계·건설·정비·해체·수출 또는 관련 부품의 제조·공급과 관련된 산업을 말한다.

- 4. "해상풍력발전 예비지구"(이하 "예비지구"라 한다)란 풍황, 환경 및 주민피해 최소화 등 해상풍력발전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조건이 우수하여 해상풍력발전지구로 지정이 고려되는 지역으로서 제11조 에 따라 지정·고시된 구역을 말한다.
- 5. "해상풍력발전지구"(이하 "발전지구"라 한다)란 해상풍력발전시설을 집단으로 설치·운영하기 위하여 제16조에 따라 지정·고시된지구를 말한다.
- 6. "기본설계"란 예비지구에 해상풍력발전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입지정보·풍황 등을 기반으로 한 해상풍력발전시설의 배치, 해상 풍력발전기의 용량 및 전력계통(「전기사업법」 제2조제14호에 따른 전력계통을 말한다) 연계 등을 정한 기초 설계를 말한다.
- 7. "해상풍력발전사업자"란 발전지구에서 해상풍력발전사업을 시행하는 자로서 제19조제1항에 따라 선정된 자를 말한다.
- 8. "개발실시계획"(이하 "실시계획"이라 한다)이란 해상풍력발전사업 자가 발전지구에서 해상풍력발전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수립하는 시행계획을 말한다.
- 9. "풍황(風況)"이란 특정 지역의 풍력자원을 계산하기 위하여 필요한 평균풍속·주풍향·풍력밀도 및 난류강도 등의 제반 정보를 말한다.
- 10. "공동구"란 전기·가스·수도 등의 공급설비, 통신시설, 하수도 시설 등 지하매설물을 공동 수용함으로써 미관의 개선, 도로구조

- 의 보전 및 교통의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지하에 설치하는 시설물을 말한다.
- 제3조(국가 등의 책무) ① 국가는 해상풍력발전 보급을 확대하고 해상 풍력산업의 발전을 도모하는 데에 필요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· 시행하여야 한다.
 - ② 국가는 해상풍력발전산업과 관련된 인허가, 연구개발, 인력 양성, 수출진흥, 투자유치 등 그 사업 시행에 필요한 행정적·기술적·재 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.
 - ③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의 시책과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해상풍력발전산업의 진흥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할 수 있다.
 -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해상풍력발전산업을 원활하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상호 협력하여야 한다.
 - ⑤ 해상풍력발전사업자는 사업활동을 하는 경우 수산업 기타 해양의 다양한 개발 및 이용, 해양 환경 보전 및 해양 안전 확보와의 조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하고, 국가의 시책에 협력하여야한다.
- 제4조(적용 범위) 이 법은 해상풍력발전사업 및 해상풍력발전시설의 설치에 대하여 적용한다. 다만, 「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 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」 제303조에 따른 풍력발전사업은 제외한 다.
- 제5조(다른 법률과의 관계) ① 이 법은 해상풍력발전사업 및 해상풍력

발전시설의 설치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. 다만, 다른 법률에서 이 법의 규제에 관한 특례보다 완화되는 규정이 있 으면 그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.

② 해상풍력발전의 보급 및 지원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「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·이용·보급촉진법」에 따른다.

제2장 해상풍력발전위원회 및 해상풍력발전추진단

- 제6조(해상풍력발전위원회) ① 해상풍력발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·의결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해상풍력발전위원회(이하 "위원회"라 한다)를 둔다.
 - 1. 제11조 및 제12조에 따른 예비지구의 지정·변경지정 및 지정해 제에 관한 사항
 - 2. 제13조에 따른 기본설계의 수립・확정 및 변경에 관한 사항
 - 3. 제16조 및 제18조에 따른 발전지구의 지정·변경지정 및 지정해 제에 관한 사항
 - 4. 제19조에 따른 해상풍력발전사업자의 선정 및 선정 취소에 관한사항
 - 5. 제20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· 변경승인 및 취소에 관한 사항
 - 6. 이 법에 따른 결정 · 허가 · 인가 · 지정 · 승인 · 신고 · 협의 · 지정

해제에 관한 사항

- 7. 해상풍력발전시설의 설치 및 발전지구의 조성과 관련한 관계 행정기관의 이견 조정에 관한 사항
- 8. 예비지구·발전지구의 지정 및 해상풍력발전사업과 관련한 분쟁 조정에 관한 사항
- 9. 해상풍력발전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
- 10. 해상풍력발전사업 및 해상풍력발전시설의 설치 등과 관련한 법률·제도 및 정책의 개선에 관한 사항
- 11.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에 부치는 사항
- ② 위원회는 제1항제10호의 사항을 심의·의결한 경우 중앙행정기 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그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.
- 제7조(위원회 구성·운영) ① 위원회는 위원장 2명을 포함한 25명 이 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, 위원장은 국무총리와 제2항제2호에 따른 위촉위원 중에서 대통령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한다.
 - ②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당연직 위원과 위촉위원으로 한다.
 - 1. 당연직 위원: 기획재정부장관, 국방부장관, 행정안전부장관, 농림 축산식품부장관, 산업통상자원부장관, 환경부장관, 국토교통부장관, 해양수산부장관, 국가유산청장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
 - 2. 위촉위원: 에너지·자원, 환경·해양환경, 수산업, 해상교통, 국토

- 이용, 과학·기술 및 갈등조정 등 풍력발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국무총리가 위촉하는 사람
- ③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간사위원 1명을 두며, 간사위원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.
- ④ 위원장은 각자 위원회를 대표하며,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.
- ⑤ 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국무총리인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.
- ⑥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, 연임할 수 있다. 다만,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.
- ⑦ 위원회의 회의(화상회의를 포함한다)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,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 다만,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·의결할 수 있다.
- 8 위원회는 그 소관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분쟁 조 정, 기술 자문 등 분야별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다.
- ⑨ 그 밖에 위원회, 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- 제8조(위원의 결격사유 등)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.

- 1. 피성년후견인
- 2. 법률 또는 법원의 판결에 따라 자격이 정지된 사람
- 3.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(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)되거나 그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- 4.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
- ②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해임 또는 해촉되지 아니한다.
- 1.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
- 2. 심신쇠약으로 장기간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
- 제9조(추진단 등의 설치) ① 위원회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에 해상풍력발전추진단(이하 "추진단"이라 한다)을 둔다.
 -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추진단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, 지방자치단체 및 관련 기관·법인·단체(이하 "관계기관"이라 한다)의 장에게 소속 공무원 또는 임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.
 - ③ 추진단은 추진단의 업무를 지원하고, 해상풍력발전사업자가 실시계획 등을 효과적으로 수립·실행할 수 있도록 해상풍력발전지원단(이하 "지원단"이라 한다)을 둘 수 있다.

④ 그 밖에 추진단과 지원단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으로 정한다.

제3장 예비지구 지정 및 발전지구 지정

- 제10조(해상풍력입지정보망의 구축·운영)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은 예비지구 및 발전지구의 지정에 필요한 풍황, 어 업활동, 환경·해양환경, 해상교통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의 신속한 수집·분석을 위하여 해상풍력입지정보망을 구축·운영하여 야 한다.
 -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은 관계기관의 장에게 해 상풍력입지정보망의 구축·운영에 필요한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. 이 경우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요청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.
 - ③ 관계기관의 장은 해상풍력입지정보망의 구축·운영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의 제공을 위하여 관련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.
 - ④ 그 밖에 해상풍력입지정보망의 구축·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- 제11조(예비지구의 지정 등)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 은 제10조에 따른 해상풍력입지정보망을 활용하여 다음 각 호의 요 건을 모두 충족하는 지역을 위원회의 심의·의결을 거쳐 예비지구

로 지정할 수 있다. 이 경우 「전기사업법」 제25조에 따른 전력수 급기본계획상의 풍력발전설비계획을 고려하여야 한다.

- 1. 해상풍력발전에 적합한 풍황을 보유할 것
- 2. 어업활동에 영향이 적을 것
- 3. 해상교통상의 안전 확보에 장애가 되지 않을 것
- 4. 항만 · 어항의 이용과 운영에 지장을 주지 않을 것
- 5. 해양환경ㆍ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이 적을 것
- 6. 군사 작전의 수행에 미치는 영향이 적을 것
- 7.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출 것
-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은 「전기사업법」 제7조 제1항에 따라 해상풍력발전사업 허가를 받은 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허가를 받은 해상풍력발전사업지역(이하 "허가지역"이라 한다)을 위원회의 심의·의결을 거쳐 예비지구로 지정할 수 있다. 이 경우해당 허가지역은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.
-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예비지구 지정을 하려는 경우 미리 해당 예비지구를 관할하는 특별 시장·광역시장·특별자치시장·도지사·특별자치도지사(이하 "시·도지사"라 한다)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(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. 이하 같다)의 의견을 듣고 예비지구로 지정하여야 한다.
- ④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은 예비지구의 위치, 면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지방자치

단체의 장과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후 위원회의 심의·의결을 거쳐 예비지구를 변경하여 지정하여야 한다.

- 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예비지구를 지정하거나 제4항에 따라 변경지정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바에 따라 이를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.
- ⑥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예비지구 지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소유자와 협의하여 풍황계측기를 매수할 수 있다. 이 경우 그 가격의산정시기·방법 및 기준에 관하여는 「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」 제67조제1항 및 제75조를 준용한다.
- ⑦ 그 밖에 예비지구의 지정 및 변경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- 제12조(예비지구의 지정해제)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 관은 예비지구의 지정 목적을 달성하였거나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원회의 심의·의결을 거쳐 예비지구의 지정을 해제할수 있다.
 -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예비지구의 지정을 해제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.
 - ③ 제16조에 따라 예비지구의 전부 또는 일부가 발전지구로 지정되는 경우 발전지구로 지정되지 않은 예비지구는 지정이 해제된 것으로 본다.

- ④ 그 밖에 예비지구의 지정해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- 제13조(기본설계의 수립·확정 등)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예비지구를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복수의 기본설계안을 수립하고, 위원회의 심의·의결을 거쳐 복수의 기본설계를 확정한다. 확정된 기본설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같다.
 - 1. 예비지구의 명칭 · 위치 · 면적
 - 2. 해상풍력발전시설의 배치 및 용량
 - 3. 해상풍력발전사업의 시행방법
 - 4. 전력계통 연계방안 및 주요 기반시설계획
 - 5. 해양환경성ㆍ해상교통안전성 및 이해관계자의 수용성 확보 계획
 - 6. 그 밖에 예비지구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
 -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기본설계안을 확정하거나 확정된 기본설계 중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환경적 측면에서의 영향 조사를 실시하고, 해양수산부장관에게 협의를 요청하여야 한다. 다만, 기본설계안 또는 기본설계중 중요한 변경사항에 「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1호에 따른 공유수면 외 지역이 포함될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유수면 외 지역에 대한 환경적 측면에서의 영향 조사를 실시하고 환경부장관에게 협의를 요

청하여야 한다.

- ③ 제2항에 따라 협의를 요청받은 해양수산부장관 및 환경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의견을 회신하여야 하며 이 경우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의견을 기본설계안 또는 변경하는 기본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.
- ④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기본설계안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풍황계측기를 설치할 수 있다.
- 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하여 기본설계안 수립 시 해상풍력 부품 조립 및 설치선박 활용을 위한 배후항만 조 성 계획을 포함하여야 한다
- ⑥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기본설계안을 수립하거나 기본설계를 확정·변경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관보에 공고하여야 한다.
- 제14조(민관협의회 구성·운영) ① 예비지구를 관할하는 시·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어업인단체, 주민대표, 관계전문가 등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민관 협의회를 구성·운영하여야 한다. 다만, 예비지구가 「배타적 경제 수역 및 대륙붕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배타적 경제수역에 위치하거 나, 두 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 관할 해역에 중첩하여 위치한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하여 예비지구 지정 시 위원회 심의·의결을 거쳐 민관협의회를 구성·운영하는 시·도

지사 또는 시장 · 군수 · 구청장을 결정한다.

- 1. 기본설계안에 관한 사항
- 2. 발전지구의 지정 변경지정 지정해제에 관한 사항
- 3. 「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·이용·보급 촉진법」 제12조의7 제3항에 따라 발급되는 공급인증서 판매 수익의 활용방안 등 지역 상생방안 및 주민 이익 공유에 관한 사항
- 4. 수산업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관한 사항
- 5. 그 밖에 이해관계자 수용성 확보에 필요한 사항
- ② 시·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기본설계안이 공고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민관협의회를 구성·운영하여야 한다. 이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제적 인센티브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지원을할 수 있다.
-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기간 안에 민관협의회가 구성되지 아니한 경우 시·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에게 민관협의회의 구성·운영을 요청할 수 있다.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시·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.
- ④ 시·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민관협의회의 협의를 하기 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본설계안을 어업인, 주민등 이해관계자 및 관계전문가 등(이하 "이해관계자등"이라 한다)이

열람하게 하고, 공청회 등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여 이해관계자등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.

- ⑤ 시·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민관협의회의 협의결과를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. 다만, 협의결과를 통보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회와 협의하여 통보기한을 한 차례 연장할 수 있다.
- ⑥ 시·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하는 과정에서 분쟁의 조정 등이 필요한 경우 위원회에 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. 이 경우 위원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이를 조정하여야 한다.
- 제15조(해상풍력발전사업에 대한 주민참여 이익공유) ① 발전지구에 해상풍력발전시설이 설치되는 지역의 주민과 그 설치로 인하여 어업활동에 영향을 받는 어업인은 「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·이용·보급 촉진법」 제27조의2에 따라 해당 지역의 해상풍력발전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.
 - ② 제1항에 따른 어업인에 대해서는 주민참여의 투자규모, 수익률 등을 우대할 수 있다.
 - ③ 제1항의 참여대상 주민 및 어업인의 범위 및 제2항의 투자규모 수익률,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한다.
- 제16조(발전지구의 지정 등)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제14조에 따라 민관협의회의 협의를 거친 예

비지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원회의 심의 · 의결을 거쳐 발전지구로 지정할 수 있다.

- 1. 경제성 확보가 가능한 풍황을 보유할 것
- 2. 발전지구 부지 및 기반시설의 조성이 가능할 것
- 3. 이해관계자 수용성 확보 및 환경친화적 발전지구 조성이 가능할 것
- 4. 해상풍력산업 생태계 강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
- 5.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출 것
-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발전지구의 위치, 면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민관협의회 협의 및 위원회 의 심의·의결을 거쳐 발전지구를 변경하여 지정하여야 한다.
-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발전지구를 지정하거나 변경지정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.
- ④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발전지구가 지정·고시된 후 해당 발전지구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관한 허가 또는 그 밖의 처분을 하거나 직접 사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.
- 1. 도로・철도・교량・운하・수도 및 수로 등과 그 부속물의 설치
- 2. 하천유수(河川流水)의 진로변경, 하천 또는 해수면의 매립과 준설 (浚渫), 항만의 축조 또는 변경 및 어업권・양식업권의 설정

- 3. 건축물의 신축·증축 또는 개축
- 4. 토지의 개간, 지반의 굴착 매립, 그 밖에 토지의 형질변경
- 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발전지구에서 해상풍력발전사업이 원활하 게 수행될 수 있도록 필요한 행정적·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.
- ⑥ 그 밖에 발전지구의 지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- 제17조(발전지구 계통의 연계 및 공동구의 설치 등) ① 산업통상자원 부장관은 「전기사업법」 제2조제6호에 따른 송전사업자(이하 "송전 사업자"라 한다)에게 다음 각 호의 시설에 대한 건설을 요청할 수 있다. 이 경우 송전사업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 다.
 - 1.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발전지구에서 복수의 해 상풍력발전사업자가 공동으로 이용하는 접속설비(이하 "공동접속 설비"라 한다)의 건설
 - 2. 발전지구의 전기·가스·수도 등의 공급설비, 통신시설, 하수도시설 등 지하매설물을 공동 수용하기 위한 공동구(「국토의 계획 및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9호의 공동구를 말한다)의 건설
 - ② 송전사업자는 제1항제1호에 따라 공동접속설비에 접속하는 해상 풍력발전사업자에게 「전기사업법」 제15조에 따른 접속설비의 건설과 운전유지 등에 대한 비용을 부과할 수 있다.
 - ③ 공동구는 시·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이 관리한다. 다

만, 공동구의 효율적인 관리·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그 관리·운영을 위탁할 수있다.

제18조(발전지구의 지정해제 등)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발전지구의 지정 목적을 달성하였거나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원회 의 심의·의결을 거쳐 발전지구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.

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발전지구의 지정을 해제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.

제4장 해상풍력발전사업자의 선정 및 인ㆍ허가 등

제19조(해상풍력발전사업자의 선정 등)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입찰방식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·의결을 거쳐 해상풍력발전사업자를 선정할 수 있다. 이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1조제2항에 따라 허가지역이 예비지구로 지정된 허가사업자, 같은 조 제6항에 따라 풍황계측기 매수협의가 이루어진 풍황계측기 소유자,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입찰 시 우대하여야 한다.

1. 발전단가 등 해상풍력발전사업의 효율적 수행능력

- 2. 재무 건전성과 자금 조달능력
- 3. 이익공유 등 이해관계자 상생 및 수용성 확보 노력
- 4. 그 밖에 해상풍력발전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
-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·의결을 거쳐 해상풍력발전사업자의 선정을 취소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. 다만,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선정을 취소하여야 한다.
- 1. 해상풍력발전사업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선정된 경우
- 2. 해상풍력발전사업자가 제1항 각 호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
- 3. 해상풍력발전사업자가 이 법을 위반한 경우로서 공익을 위하여 해상풍력발전사업자 선정의 취소가 필요한 경우
- 4. 해상풍력발전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제20조에 따른 실시계획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
- 5. 해상풍력발전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해상풍력발전사업자로 선정된 날부터 2년 이내에 제20조제1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을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. 다만, 해상풍력발전사업자가 「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인 경우 같은 법 제40 조제3항에 따른 예비타당성조사의 준비와 실시에 소요되는 기간은

산입하지 아니한다.

- 6. 해상풍력발전사업자가 제20조제1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해상풍력발전사업에 착수하지 아니한 경우
-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해상풍력발전사업자의 선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새로운 해상풍력발전사업자를 선정할 수 있다. 이 경우 새로운 해상풍력발전사업자의 선정에 관하여는 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.
- ④ 제3항에 따라 선정된 해상풍력발전사업자는 제20조제1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에 관한 종전의 해상풍력발전사업자의 지위를 승계 한다.
- 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해상풍력발전사업자를 선정하거나 그 선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.
- ⑥ 그 밖에 해상풍력발전사업자의 선정 및 선정 취소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- 제20조(실시계획의 승인 등) ① 해상풍력발전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실시계획을 수립하여 위원회의 심의·의결을 거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승인을 받아야 한다. 이 경우 해상풍력발전 사업자는 발전지구를 둘 이상의 공구(工區)로 분할하여 단계별 실시 계획을 수립하고 승인을 받을 수 있다.

- 1. 해상풍력발전시설의 개요
- 2. 해상풍력발전사업 구역의 위치 및 면적
- 3. 해상풍력발전사업의 시행기간
- 4. 해상풍력발전사업 시행의 소요 자금 및 그 조달에 관한 사항
- 5. 해상풍력발전사업과 관련한 도로·교량·항만 등 공공시설의 설 치 및 비용 부담에 관한 사항
- 6. 해양환경 · 생태계 보전에 관한 사항
- 7. 민관협의회 협의 결과의 이행에 관한 사항
- 8. 어업권 · 양식업권의 손실보상에 관한 사항
- 9. 그 밖에 실시계획의 시행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
- ② 해상풍력발전사업자는 제1항의 개발실시계획에 대한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.
- 1. 제21조제1항에 따른 환경성평가서
- 2. 제22조제1항 각 호의 인·허가 및 협의 등을 위하여 제출하는 서 류
- ③ 해상풍력발전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승인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·의결을 거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변경승인을 받아야 한다. 다만,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.
- ④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 •의결 전에 미리 해당 발전지구를 관할하는 시·도지사 또는 시장

- ·군수·구청장의 의견을 듣고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.
- ⑤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·의결을 거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받거나 거친 것으로 본다.
- 1.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도시계획위원회
- 2. 「전기사업법」에 따른 전기위원회
- 3. 「자연재해대책법」에 따른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
- 4. 「산지관리법」에 따른 산지관리위원회
- 5. 「경관법」에 따른 경관위원회
- 6. 「자연환경보전법」에 따른 자연경관심의위원회
- 7. 「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문화유산위원 회
- ⑥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실시계획을 승인하거나 제3항에 따라 변경승인을 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이를 관보에 고시하고, 관할 시·도지사 및 시장·군수·구청장에게 관계 서류의 사본을 보내야 한다. 이 경우 관계 서류의 사본을 받은시·도지사 및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이를 14일 이상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.
- ⑦ 제6항에 따라 관계 서류의 사본을 받은 관할 시·도지사 및 시 장·군수·구청장은 관계 서류에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 률」 제2조제4호에 따른 도시·군관리계획의 결정에 관한 사항이

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32조제2항에 따른 지형도면 승인 신청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. 이 경우 해상풍력발전사업자는 지형도면의 고시 등에 필요한 서류를 해당 시·도지사 및 시장·군수·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- 8 그 밖에 실시계획의 승인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- 제21조(환경영향평가 및 해역이용영향평가에 관한 특례) ① 해상풍력 발전사업자는 실시계획의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 「환경영향평가법」 제22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및 「해양환경관리법」 제85조에 따른 해역이용영향평가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성평가를 실시하고 환경성평가서를 작성하여 산업통상자원 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 -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환경성평가서에 대하여 환경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에게 협의를 요청하여야 한다. 이 경우 협의를 요청받은 환경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은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.
 - ③ 제2항에 따라 의견이 제출된 경우에는 「환경영향평가법」 제22 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및 「해양환경관리법」 제85조에 따른 해 역이용영향평가의 협의가 완료된 것으로 본다.
- 제22조(다른 법률에 따른 인·허가등의 의제) ① 해상풍력발전사업자 가 제20조에 따라 발전지구에서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

받은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승인·허가·인가·신고·지정 또는 결정·면허·협의·해제·심의·처분 등(이하 "인·허가등"이라 한다)을 받은 것으로 보며, 제20조제6항에 따라 실시계획이 고시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법률에 따른 인·허가등이 고시 또는 공고된 것으로 본다.

- 1. 「경관법」 제27조에 따른 개발사업의 경관 심의 및 같은 법 제 28조에 따른 건축물의 경관 심의
- 2. 「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」 제8조에 따른 공유수면 의 점용·사용허가,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점용·사용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신고,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매립면허, 같은 법 제35조에 따른 국가 등이 시행하는 매립의 협의 또는 승인 및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공유수면매립실시계획의 승인
- 3. 「광업법」 제24조에 따른 불허가처분 및 같은 법 제34조에 따른 광업권 취소처분 또는 광구 감소처분
- 4. 「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21조에 따른 국유림의 대부 또는 사용의 허가
- 5.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0조에 따른 도시·군관 리계획의 결정, 같은 법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의 허가, 같은 법 제86조에 따른 도시·군계획시설사업 시행자의 지정 및 같은 법 제88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
- 6. 「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」 제13조에 따른 행정기관의 처

분에 관한 협의

- 7. 「농어촌도로 정비법」 제18조에 따른 도로의 점용 허가
- 8. 「농어촌정비법」 제23조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사용허가
- 9. 「농지법」 제34조에 따른 농지전용의 허가·협의, 같은 법 제35조에 따른 농지의 전용신고 및 같은 법 제36조에 따른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협의
- 10. 「도시개발법」 제9조제5항에 따른 도시개발구역에서의 행위의 허가
- 11. 「도로법」 제36조에 따른 도로관리청이 아닌 자에 대한 도로 공사 시행의 허가, 같은 법 제52조에 따른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 결허가 및 같은 법 제61조에 따른 도로의 점용 허가
- 12. 「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」 제7조에 따른 지표조사 결과에 따른 협의
- 13. 「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」 제35조에 따른 허가
- 14. 「사도법」 제4조에 따른 사도(私道)의 개설허가
- 15. 「사방사업법」 제14조에 따른 벌채 등의 허가 및 같은 법 제20 조에 따른 사방지(砂防地) 지정의 해제
- 16. 「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36조제1항·제4항 에 따른 입목벌채등의 허가·신고
- 17. 「산지관리법」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・신고
- 18. 「수도법」 제52조 및 제54조에 따른 전용상수도 및 전용공업용

수도 설치의 인가

- 19. 「습지보전법」 제13조제5항제3호에 따른 습지보호지역에서의 행위승인
- 20. 「자연공원법」 제23조에 따른 공원구역에서의 행위의 허가
- 21. 「자연재해대책법」 제4조에 따른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
- 22. 「자연환경보전법」 제28조에 따른 자연경관영향의 협의
- 23. 「장사 등에 관한 법률」 제27조제1항에 따른 개장허가
- 24. 「전기사업법」 제7조에 따른 전기사업의 허가 및 같은 법 제10 조에 따른 전기사업 양수 등의 인가
- 25. 「초지법」 제21조의2에 따른 초지에서의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허가 및 같은 법 제23조에 따른 초지전용의 허가
- 26. 「하천법」 제30조에 따른 하천공사 시행의 허가, 같은 법 제33 조에 따른 하천의 점용허가 및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하천수의 사용허가
- 27. 「항로표지법」 제9조제6항, 제13조제1항에 따른 항로표지의 설 치·관리의 허가
- 28. 「항만법」 제9조제2항에 따른 항만개발사업 시행의 허가 및 같은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항만개발사업실시계획의 승인
- 29. 「해상교통안전법」 제13조에 따른 해상교통안전진단
- 30. 「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12조에 따른 해양용도 구역 중 에너지개발구역으로의 지정

- ② 제20조제1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변경승인을 신청하는 해상풍력발전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인·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보는 대상 법률에서 정하는 관련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.
-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실시계획을 제20조제1항에 따라 승인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변경 승인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.이 경우 협의를 요청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요청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하며, 그 기간 내에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협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.
- ④ 해상풍력발전사업자가 제20조에 따라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은 해상풍력발전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「건축법」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때에는 같은 법 제11조 제2항에 따른 기본설계도서를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한 경우같은 법 제11조 또는 제14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것으로 본다.
- 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20조제1항에 따라 실시계획을 승인하거나 제20조제3항에 따라 실시계획을 변경한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의장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.
- 제23조(실시계획의 승인취소)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은 해상풍력발전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

는 경우 위원회의 심의·의결을 거쳐 이 법에 따른 발전지구 개발 사업에 대한 명령이나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, 공사중지 등을 명하 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. 다만,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실시계획의 승인을 취소하여야 한다.

- 1.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은 경우
- 2. 실시계획 승인일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3년 이내에 발전지구 개발사업에 착수하지 아니하는 경우
- 3. 천재지변, 사업시행자의 파산 또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발전지구 개발사업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
- ② 제1항에 따라 실시계획의 승인이 취소된 경우로서 제22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인·허가등이 있는 경우에는 그 인·허가등은 효력을 상실하며, 수립·변경되었던 실시계획 등은 해당 실시계획의 승인 전의 상태로 환원되거나 폐지된 것으로 본다.
- ③ 제1항에 따라 실시계획의 승인이 취소된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 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관보에 고시하고 관할 시·도지사 및 시장·군수·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
- 제24조(토지등의 수용·사용) ① 해상풍력발전사업자는 해상풍력발전 사업에 필요한 토지·건물 및 그 밖에 토지에 정착한 물건과 이에 관한 소유권 외의 권리, 광업권, 어업권·양식업권 및 물의 사용에

관한 권리(이하 "토지등"이라 한다)를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다.

- ② 제20조제6항에 따른 실시계획 승인·변경승인의 고시가 있는 때에는 「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」 제20조 및 제22조에 따른 사업인정 및 사업인정의 고시가 있는 것으로 본다.
- ③ 제1항에 따른 토지등의 수용 또는 사용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「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」을 준용한다.
- 제25조(착공 신고) ① 해상풍력발전사업자는 실시계획에 따른 개발사업을 착공하거나 3개월 이상 공사를 중지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그 내용을 신고하여야 한다.
 - ② 제1항에 따라 해상풍력발전사업자가 착공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「전기사업법」 제61조에 따른 전기사업용전기설비에 대한 공사계획의 인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.
 - ③ 제1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.
- 제26조(준공인가) ① 해상풍력발전사업자가 실시계획에 따라 발전지구 개발사업을 완료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준공인가를 신청하여야 한다.
 - ② 제1항에 따라 준공인가 신청을 받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지체

- 없이 준공검사를 한 후 그 공사가 실시계획대로 완료된 경우에는 즉시 준공인가를 하여야 한다. 다만, 그 공사가 실시계획대로 완료 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보완시공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하 여야 한다.
-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2항 본문에 따라 준공인가를 한 경우에는 이를 위원회에 보고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고한 후 해상풍력발전사업자에게 알려야 한다.
- ④ 제2항에 따른 준공인가를 받은 해상풍력발전사업자는 제22조제1항에 따라 실시계획 승인으로 의제되는 인·허가등에 따른 해당사업의 준공검사 또는 준공인가 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.
- ⑤ 해상풍력발전사업자는 제2항에 따른 준공인가 전에는 발전지구 개발사업으로 설치된 발전시설 및 설비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. 다만,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사용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- ⑥ 해상풍력발전사업자는 제20조제1항에 따라 공구를 구분하여 실 시계획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공구별로 준공인가를 신청할 수 있 다.
- 제27조(풍황 계측기의 이용 등) ① 해상풍력발전사업자는 발전지구를 조성하는 과정에서 제13조제4항에 따른 풍황계측기 설치 등 해상풍력발전사업자가 하여야 하는 개발행위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우선 실시한 경우 이 비용에 대하여 납부하여야 한다.

- ② 제1항에 따른 비용의 부과 대상, 절차 및 납부 방법 등에 필요한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- 제28조(집적화단지에 대한 특례)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「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・이용・보급촉진법」 제2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집 적화단지로 지정받은 단지에 대하여 위원회의 심의・의결을 거쳐 예비지구 또는 발전지구로 지정할 수 있다.
- 제29조(예비지구 및 발전지구 아닌 지역에서의 해상풍력사업) ① 예비지구 및 발전지구가 아닌 지역에서 해상풍력발전사업을 하려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(이하 "인가등"이라 한다)을 신청하는 경우 관할 행정기관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에 입지 적정성 평가를 요청하여야 하고, 인가등을할 때에 그 평가 결과를 고려하여야 한다.
 - 1. 제22조제1항에 따른 인ㆍ허가등
 - 2. 「환경영향평가법」 제22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
 - 3. 「해양환경관리법」 제84조에 따른 해역이용 협의 및 같은 법 제 85조에 따른 해역이용영향평가
 - ② 제1항에 따른 입지 적정성 평가의 대상,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제5장 해상풍력발전산업 기반 조성 등

- 제30조(전문인력의 양성 등)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해상풍력발전산업 관련 전문인력의 양성과 기술의 향상에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고추진할 수 있다.
 -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전문인력 양성기관을 지정하여 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을 실시하게 할 수 있으며,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.
 -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전문인력의 양성, 양성기관의 지정 및 지정해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- 제31조(국제협력 추진)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해상풍력발전산업의 국제적인 동향을 파악하고 국제협력을 추진하여야 한다.
 -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해상풍력발전산업의 국제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관련 기술과 인력의 국제교류 및 국제공동연구개발 등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.
- 제32조(항만시설의 지원)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상풍력발전시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해상풍력발전시설의 건설 및 사후관리에 필요한 항만시설을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- 제33조(보안관리)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업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자는 업무 처리 중 알게 된 기본설계 및 개발실시계획과 관련한 미공개정보(자산 또는 재산상 이익의 취득 여부의 판단에 중대한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로서 불특정 다수인이 알 수 있도록 공개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)를 부동산 등의 매매, 그 밖의 거래에 사용

하거나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해서는 아니된다.

- 1. 산업통상자원부
- 2. 제2조제7호에 따른 해상풍력발전사업자
- 3. 제6조 및 제7조에 따른 해상풍력발전위원회 및 실무위원회
- 4. 제9조에 따른 추진단 및 지원단
- 제34조(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)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「형법」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.
 - 1. 제7조제2항제2호에 따른 위촉위원으로서 공무원이 아닌 자
 - 2. 제9조제2항에 따른 추진단의 파견 임직원으로서 공무원이 아닌 자
 - 3. 제9조제3항에 따른 지원단의 파견 직원으로서 공무원이 아닌 자

제6장 벌칙

- 제35조(벌칙) ① 제33조를 위반하여 기본설계 및 개발실시계획에 관련한 미공개 정보를 부동산 등의 매매, 그 밖의 거래에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그 위반행위로 얻은 재산상의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의 3배 이상 5배 이하에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.
 - ② 제1항의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이 5억원 이

상인 경우에는 제1항의 징역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한다.

- 1.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
- 2.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이 50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무기 또는 5 년 이상의 징역
-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징역에 처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벌금을 병과할 수 있다.
- ④ 제1항의 죄를 범한 자 및 제2항에 해당하는 자가 제1항 및 제2항 위반으로 취득한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은 몰수한다. 다만, 이를 몰수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한다.
- 제36조(벌칙) ①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된 제20조에 서 정하는 실시계획을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
 - ②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된 제22조제2항에서 정하는 인·허가등 절차에 관한 관계 서류를 제출하여 실시계획을 승인을 받은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
 - ③ 제25조제1항을 위반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공사를 시작하거나 중지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
 - ④ 제26조제2항에 따른 준공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발전시설 및 설

비를 사용한 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

제37조(양벌 규정)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, 사용인,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6조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부과한다. 다만, 법인 또는 개인이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